

추방재판(1):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상당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인사회에서 이민법이라는 분야는 기존의 정보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는다. 하지만 추방 재판이라는 단어는 한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한인 10명 중 3명이 불법 체류자인 현 상황에서 한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인 히스패닉 직원들이나 조선족 분들에게는 추방 재판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만 않을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몇 차례의 칼럼의 예를 통해 추방재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김씨는 20년 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 하게 되었다. 그는 한인 회사에서 직장을 갖게 되었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러던 중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선생은 심한 우울증 환자인 아내를 보살피고, Special education 을 받아야 했던 자녀를 키우면서 좋은 남편과 아빠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기에 영주권을 신청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성실히 일해왔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차를 빌려 가까운 식당에서 친구와 가볍게 술과 저녁을 먹고 돌아오던 중 신호를 어겨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었으나 음주한 사실로 인해 체포 되고 말았다. 경찰서로 이송되어 지문을 찍은 후, 김선생은 바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실을 발견한 경찰은 이민국에 연락을 하였다. 음주 운전은 처음이었기에 벌금으로 쉽게 해결이 되었지만, 음주 운전 케이스 종료 후엔 바로 추방 소속 절차를 위해 구치소로 이송된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하게 되고, 이후로부터는 이민 법정의 케이스로 바뀌어 추방 재판을 통한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NTA 는 charging document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장에서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이유가 적힌 서류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고용해 이민국 담당관과 검사와의 대화를 속히 시작하게하고, 보석 준비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이 되면 이민 보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석은 범죄가 중 범죄 등의 심각한 범죄 행위 없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있으면서 video conference 를 통해 보석신청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5,000- \$10,000 정도의 보석금으로 풀려 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권자가 이민 보석금의 full amount 먼저 낸 후, 감금된 불법 체류자가 풀려난 후 추방재판에 추후 반드시 출두 할 것을 guarantee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형사 보석금과는 다른 점이다. 이 보석금은 추방 재판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도주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

이민국 구치소에서 풀려나오게 되면 첫 master hearing 날짜가 잡히게 되는데 이 히어링은 많은 케이스를 한꺼번에 판사가 듣는 것으로 5-10 분 정도 소요가 된다.

첫 마스터 히어링에서는 NTA 를 판사와 같이 리뷰하고 서류에 적힌 charges 를 인정하거나 디나이 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사는 추방을 피할수 있는 어떤 defense 가 있는지 묻게된다. 이 과정은 추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절차이다.

김씨의 경우 미국에서 10 년 이상을 살았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42B, Cancellation of Removal 을 파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 만일 추방 재판을 통해 김씨의 가족이 이 분의 추방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 주게 된다면 김씨는 추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 년 동안이나 애타게 기다렸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해서 42B 가 승인이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되었던 안타까웠던 상황이 극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추방재판(2):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지난번에 이어 계속해서 추방재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밀입국한 한인 김씨는 추방재판에 기소되지만 시민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것, 또한 미국에 10 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거에 의하여 42B, Cancellation of Removal 을 파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2B 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사안은, 김씨가 한국으로 추방 되었을 때, 남아있는 시민권 배우자와 자녀가 입을 극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김씨 본인 자신의 정신적, 혹 육체적 고통은 42B 승인 여부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극도로 심한 고통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언뜻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씨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심한 우울증을 알아왔기 때문에 김씨의 추방으로 인한 부인의 충격이나 심신 상태 여부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인이 겪게 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남편의 추방으로 인해 얼마나 극화될지 서류화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김씨 부인의 병원 진찰기록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evaluation 입니다. 김씨의 추방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부인의 정신적 충격을 증명해 보이면 이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부인이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검사의 반박에 대비하여야 한다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의료분야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자살 율은 세계최고이며, 엄청난 수에 달하는 우울증 환자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인 질환을 매우 부끄럽게만 여기는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정신 병원을 출입한다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사회풍조가 너무 깊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 있는 한국으로 김씨의 부인이 돌려보내지게 된다면 야기될 상황은 최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인의 치료는 지인들에게 받게 될 시선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질 것이고 병세는 악화된다는 등의 어려운 결과를 초래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 됩니다. 이렇듯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김씨 부인의 우울증은 반드시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치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김씨는 또한 special education(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에게 김씨의 존재여부는 그 자녀의 특수교육에는 물론 성장과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자녀의 선생님에게 받은 편지나 자녀의 편지를 evaluation 하면 됩니다.

특수교육은 미국에서 꾸준히 받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임과 동시에 한국의 교육 system 은 많은 부분 상당히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special education program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미국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통하여 입증해 보여주면 됩니다. 이러한 합당하고도 정당한 이유들 때문에 이 자녀는 반드시 미국에서 김씨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한 지속적인 특수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이 자녀에게 또 다른 너무도 잔인하고도 심각한 고통을 평생 안겨주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방 재판은 김씨 본인 외에 판사, 검사, 증인의 참석 하에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3-6 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김씨의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는데 증인은 일반적으로 2-3 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씨를 잘 알고 있고, 그 부인과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하여 바르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친지나 친구가 하면 됩니다. 증언을 통해 김씨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며 남편인지 그리고 good moral character(좋은 도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그 당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42B 가 그날 승인이 된다면 김씨는 판사의 승인문을 가지고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게 되고 영주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민 법정에는 수 많은 케이스들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계류)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한 추방 재판 케이스가 끝나기 까지는 2-3 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42B 의

경우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42B 신청서가 접수 되면, 노동허가증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허가증으로 소셜 넘버, 운전 면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을 준비 하실 때 영두에 두어야 하는 한가지는, 추방 케이스가 이민 법정에 넘어가면 여러 판사들 중 순서 없이 한 판사에게 맡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어떤 판사에게 이 사건이 맡겨지느냐에 따라 승인율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판사가 이 사건을 다루느냐에 따라 까다롭게 될 수도 있고 쉽게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판사가 이 케이스를 담당하게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판사를 잘 알아보고 그 성향이나 다루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준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추방재판(3):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이미 말씀 드렸듯이 많은 추방 케이스들이 계류(사건 미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료까지는 2-3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

이는 추방 재판 판사의 숫자에 비해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와 판사 모두에게 추방재판 과정은 엄청난 준비를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재판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가 (favorable factors) 많이 있는 경우라면 검사에게 기소권 재량행사 (prosecutorial discretion)를 요구할 수 있는데(검사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는 말) 만약 이것이 받아 들여 진다면 재판 없이 케이스를 종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건 담당 변호사가 담당 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담당 검사가 기소권 재량을 행사하여 케이스가 종료가 결정되면 판사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결정을 승인하게 된다. 케이스가 종결이 되면 이민국은 더 이상 이 불체자를 추방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자가 되어서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람이라면 이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기소권 재량 행사로 추방 케이스가 종결되면 재판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청할 가족 분이 없고, 영주권이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며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2B, cancellation of removal 의 승소 조건인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의 극심한 고통을 보일 수 없는 등의 약한 케이스라면, 이런 경우가 검사로부터 기소권 재량 행사를 요청 할 수 있는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기소권 재량 행사를 할 때, 검사가 보는 사항은 얼마나 미국에 거주 하였나? 가족 관계는 어떠한가? 과거 전과 기록은 있는가? 등이다. 만일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왔다면 이 기록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불법체류자에게도 텍스 보고를 권유하게 되는 것이다. 불법 입국했을 경우 미국에 언제부터 체류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보고 기록은 언제부터 거주하고 있었다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세금보고는 앞으로의 이민 개혁 개정이나 추방 재판시 검사로부터 기소권 재량행사를 요구 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케이스가 검사로부터 기소권 재량행사 또한 거절되고 재판에서도 패소 되었다고 해도 케이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그 날 당장 체포되어 감금, 추방 될 것 이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케이스가 판사로부터 기각 되더라도 판사의 결정에 항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 할 경우 이민 항소 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에 항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legal brief 를 통해 판사의 결정이 잘못 된 것이라고 반론 하게 된다.

이민 항소 위원회 에도 또한 많은 항소 케이스가 계류 중이라 항소를 해도 1년 이상 걸리며 이 기간 안엔 추방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민 항소 위원회에서도 기각이 된다면 미연방 항소 법원,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까지도 항소 할 수 있다.

물론 연방 법원에 항소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항소가 받아들여 진다면 케이스는 다시 추방재판으로 돌려 보내져 케이스는 다시 계속 진행 되는 것이다.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힘든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항소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항소를 기다리는 동안 이민법 개혁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추방 재판에서 패소 하고 이민 항소 위원회, 연방 정부에서 패소 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 시민권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 10년 전에 이미 끝난 추방 케이스를 다시 open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추방 재판에서 패소 하더라도 포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대한 미국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으면서 그 최대 방책을 알아 보는 것이 합법 신분을 최대한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이다.

이민 개혁의 예로는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이 있다. 이 개혁안으로 인해 추방위기에 놓여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추방케이스를 끝내고 합법적인 상황에서 일하고 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방에 걸려있는 경우라면 특히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놓고 기회를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http://www.avvo.com/attorneys/07024-nj-jaihong-park-1722462.html>